

『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영상·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여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시설 및 사업, 휴관일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이용료 및 수강료, 감면 및 반환,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~제9조, 안 별표)
- 위탁 운영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, 「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」 제2조
「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
- 예산조치 : 5년간 약 30억 소요 예상(시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, 미디어·콘텐츠 제작·편집 교육을 위한 공공시설로써, 뉴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, 시설 이용료와 대관료는 타 지자체의 동일 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, 추후 장비 이용에 따른 사전교육 및 고가(高價)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 본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